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박은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43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박은정 · 전용기 · 양부남
김준형 · 김재원 · 김형연
황운하 · 정춘생 · 신장식
서영교 · 백승아 · 차규근
의원(12인)

제안이유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 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에 대하여 수색, 개인위치정보 확인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이외의 실종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임.

최근 성인 실종 신고를 했으나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고 실종 신고자에게 위치 정보를 밝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한 뒤 실종 신고를 종결하였는데, 이후 동일 실종자에 대하여 다시 실종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담당 경찰공무원이 실종 신고자에게 허위사실을 통보한 것과 112신고시스템에 허위내용을 입력하고 112신고를 종결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코드로 입력 후 종결·해제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로 인

하여 실종프로파일링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법률적 공백이 확인되었음.

이에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실종자”로 정의하고,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수색, 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과 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도모하고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 도모 등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실종자”, “특정 실종자”, “유전자검사”, “유전정보”, “신상정보” 및 “안전확인”을 정의함(안 제2조).
- 다. 경찰청장은 실종자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실종신고의 내용과 접수 일시, 실종자의 신상정보, 정보의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정정·추가·삭제 등 모든 변경이력 등을 기록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하

고,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안 제8조).

마.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영상정보 등이 소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의 가족이나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점유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음(안 제16조).

사.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와 실종신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함(안 제24조 및 제25조).

아.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직접 대면을 통한 안전확인을 원칙으로 하며,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등에 한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자.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 이용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부당목적이나 허위내용으로 실종자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35조).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 및 복귀를 도모하고 국민의 생명·신체 및 사생활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소재 또는 행방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어 소재 또는 행방을 확인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형사소송법」 등 형사 관계 법령에 따라 명백하게 체포·구속·구인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피의자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2) 「군형법」에 따른 군무 이탈로 지명수배 중인 사람
- 3)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소재가 불명하여 지명수배 중인 사람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긴급구조가 필요한 사람

2. “특정 실종자”란 실종자로서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자살의 의사 또는 계획을 표시하는 등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

나. 실종 당시 실종자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긴급한 의료적 치료 또는 의약품 투여가 필요한 경우 등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사람

다. 그 밖에 신고내용 및 실종 당시 정황 등을 고려하여 실종자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어 긴급한 발견이 요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3. “유전자검사”란 개인 식별을 목적으로 혈액·머리카락·침 등의 검사대상물로부터 유전자를 분석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유전정보”란 유전자검사의 결과로 얻어진 정보를 말한다.

5. “신상정보”란 이름·나이·사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하기 위한 정보를 말한다.

6. “안전확인”이란 실종자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신체의 안전 여부를 객관적인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며,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

력하고, 관련 정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실종자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2. 실종자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
3. 실종자의 발생예방을 위한 연구·교육 및 홍보
4. 실종자에 대한 신고·발견 체계 구축 및 운영
5.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수색·수사 및 안전확인
6. 제6조에 따른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제16조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운영 및 유전자검사대상물
의 채취 및 유전정보의 관리
8. 실종사건의 관리 및 종결에 대한 감독
9. 그 밖에 실종자의 신고·발견·복귀 및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실종사건을 처리할 때에는 실종자의 생명·신체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실종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가족·신고인 또

는 그 밖의 사람과 연락하지 아니하거나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려는 경우에는 그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실종자의 신고·발견·복귀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제2장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실종자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경찰청장은 실종자에 대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실종자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자의 신상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실종자정보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실종신고의 내용과 접수 일시
2. 실종자의 신상정보
3. 제9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결과
4. 제10조에 따른 담당자와 관리책임자
5. 수색 및 발견을 위하여 실시한 조치

6. 개인위치정보등 및 이동경로정보의 요청·제공 및 이용내역
7. 안전확인의 방법과 결과
8. 사건종결의 사유 및 승인내역
9. 사건의 재검토 및 재개내역
10. 정보의 최초 등록내용과 등록·정정·추가·삭제 등 모든 변경
이력

④ 제2항에 따른 정보는 최초 등록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정보의 정정·추가 또는 삭제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변경 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실종자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가 가능한 신상정보의 범위 및 신상정보 확인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공동대응·협력 및 협조) ① 경찰청장은 해수면에서 발생한 실종자의 신고 및 발견에 있어 해양경찰청 등 다른 기관과의 공동대응 또는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경찰청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복귀 및 보호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

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동대응, 협력·협조 요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실종신고 및 사건관리

제8조(실종신고의 접수) ① 경찰관서는 관할과 관계없이 실종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서 또는 해당 신고사건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이하 “경찰관서”라 한다)는 해당 신고를 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청취하거나 그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피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 및 인상착의 등 신상정보
2. 피신고인의 소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일시·장소 및 경위
3. 피신고인이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에 처하였을 우려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그 밖에 피신고인의 실종자 또는 특정 실종자 해당 여부 판단과 발견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실종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실종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실종자가 성년인 경우

3. 실종자가 자발적으로 주거지 등을 이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4. 동일인에 대한 종전의 실종사건이 종결된 경우

5. 신고인이 실종자의 가족 또는 친족이 아닌 경우

④ 경찰관서는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내용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즉시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연령·장애·질병 및 심신상태

2.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

3. 사고 또는 재난에 처하였을 가능성

4. 자해 또는 자살의 가능성

5. 그 밖에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

③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제2조제2호의 각 목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종자를 특정 실종자로 지정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수색 및 발견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종자의 위험성을 다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관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2. 종전의 위험성 평가와 다른 사정이 확인된 경우
 3. 제10조에 따른 관리책임자가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⑤ 제4항에 따른 재평가 결과 위험성이 증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 실종자로 지정하거나 수색 인력·범위·방법을 확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⑥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의 기준·절차 및 특정 실종자의 지정·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담당자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를 접수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사건을 담당할 경찰공무원과 그 사건을 관리·감독할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감독하여야 한다.

1. 위험성 평가 및 재평가의 적정성
2. 수색·발견조치의 적정성
3. 안전확인의 적정성
4. 사건종결의 적정성

③ 담당 경찰공무원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건의 처리경과와 관련 자료를 인계하고 그 사실을 실종자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부당신고 및 허위신고의 금지) 누구든지 실종자의 수색 및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닌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실종자 신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실종자의 수색 및 발견

제12조(실종자의 수색)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주거지, 최종 목격된 장소 또는 실종자가 소재하고 있다고 추정되는 장소에의 탐문 조사
2. 신고인·목격자 또는 실종자 주변인물의 진술 청취
3. 실종자의 소재 및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조회
4. 경찰견·드론·헬기 등 발견에 필요한 장비를 활용한 수색
5. 그 밖에 경찰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력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구급활동이 필요한 경우
2. 자동차·열차·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는 경우
3. 제2호에 따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철도·공항·항만 또는 터미널 등의 교통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 또는 추정되

는 경우

4. 그 밖에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의 장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3조(영상정보 등의 보존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이동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영상정보 또는 그 밖의 자료가 보존기간의 경과 등으로 소멸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정보를 보유한 관계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해당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은 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기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가 삭제되거나 소멸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보존 요청의 대상·사유·기간·요청자 및 요청일시를 실종자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보존 요청의 방법·절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실종자의 위치 확인에 필요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위치정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주소 및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제11호마

목·사목에 따른 통신사실확인자료(이하 “개인위치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사업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대체가입수단 제공기관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자는 그 실종자의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실종자의 동의가 없음을 이유로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이동경로정보의 제공 요청)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교육감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법인·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개인에 대하여 실종자의 이동경로 확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이동경로정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를 통하여 수집된 정보
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교통카드의 사용명세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사용일시, 사용장소

② 경찰관서의 장과 경찰관서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동경로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방법·절차 및 제2항에 따른 파기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의 가족 또는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장소 등의 소유자·관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실종자 가족으로부터 채취한 검사대상물
2. 실종자가 실종 전에 착용·소지하였던 물건이나 거주하였던 장소에서 채취한 검사대상물

② 경찰청장은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③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검사 대상이 되는 실종자의 가족이나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상정보를 그 가족·소유자·관리자의 동의를 받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미리 실종자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경찰청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경찰청장 및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 또는 신상정보 데이터베이스가 실종자를 찾기 위한 목적 외로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데이터베이스의 연계) ①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자의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변사자 또는 변사체의 일부에 대하여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록한 데이터베이스와 상호 연계하여 검색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실종자의 발견과 복귀 및 변사자의 신원 확인을 위한 업무수행 외의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상호 연계·검색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검색 범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① 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실종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전정

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물·유전정보의 폐기 절차·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유전자검사 기록의 열람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유전자검사 결과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의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에 관한 신청 절차 및 서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유전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① 누구든지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할 수 없다.

② 검사대상물 채취, 유전자검사 또는 유전정보의 관리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신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금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자와 실종자의 가족이나 실종자와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관리자의 신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목적을 달성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개수색 및 실종경보) ①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특

정 실종자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하여 공개수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종자의 사진, 인상착의, 마지막 목격장소 및 그 밖에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의사능력이 있는 성인인 실종자에 대한 공개수색은 그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경찰청장 또는 시·도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수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실종정보의 송출, 실종정보의 게시 또는 방송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개된 실종자가 발견되거나 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실종정보를 해제하고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 공개수색 및 실종정보의 요건·범위·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수색의 계속) ①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수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위험성, 수색기간, 수색결과 및 새로운 정보 등을 고려하여 수색방법과 범위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 다른 경찰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협조를 요청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해당 실종사건에 대한 관리책임을 종료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5장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제24조(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의 실종이 범죄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사의 개시를 이유로 실종자의 발견 및 생명·신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수색을 중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실종사건 담당부서와 수사부서는 실종자의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④ 경찰청장은 실종자의 신속한 발견을 위하여 실종자정보시스템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라 한다)과 상호연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장기미발견 실종사건의 수사개시)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신고 내용, 실종자의 마지막 목격장소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 실종일로부터 30일 이상 실종자를 발견하지 못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수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종일 지정의 절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6장 실종자의 발견 및 안전확인

제26조(실종자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 ①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자를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실종자의 건강상태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응급의료·임시보호·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에게는 자신에 대한 실종신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신고인 또는 가족과의 연락 여부 등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확인의 방법) ① 실종자의 안전확인은 경찰공무원이 실종자를 직접 대면하여 본인의 신원, 생존 여부 및 생명·신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접 대면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안전확인을 할 수 있다.

1. 본인의 신원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통화
2. 다른 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이 직접 대면하여 확인한 결과
3. 그 밖에 본인의 신원 및 생명·신체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만으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확인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실종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을 시도한 사실
2. 실종자의 전화가 연결되거나 통화가 이루어진 사실만 있는 경우
3. 제3자가 실종자의 소재 또는 안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4. 개인위치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영상정보 또는 이동경로정보 등을 통하여 실종자의 소재만 확인하거나 추정한 사실

제7장 실종사건의 종결 및 재검토

제28조(사건종결의 요건) ① 경찰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실종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1. 제22조에 따른 방법으로 실종자의 신원과 생명·신체의 안전이 확인된 경우
2. 실종자의 사망 사실 및 신원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3. 실종신고 내용이 허위이거나 신고 대상자가 실종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만으로 실종사건을 종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인이 신고를 취소하거나 사건종결을 요청한 경우

2. 실종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거나 연락이 가능한 상태임을 확인한 경우
3. 제3자가 실종자의 안전을 확인하였다고 진술한 경우
4. 실종자의 위치 또는 이동경로가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5. 실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경우
6. 다른 경찰관서, 수사부서 또는 관계 기관에 사건을 이첩하거나 인계한 경우

제29조(사건종결의 승인) ①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은 실종사건을 종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수색·발견조치의 내용과 결과
2. 안전확인의 방법, 일시 및 근거자료
3. 사건종결의 사유

② 사건 담당 경찰공무원은 해당 실종사건의 종결 여부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다.

③ 사건종결은 해당 사건의 관리책임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종결보고서와 안전확인 자료를 확인하고 승인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④ 관리책임자는 안전확인 자료가 부족하거나 제28조에 따른 사건종결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결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종결사실의 통지 및 소재정보 보호) ① 경찰관서의 장은 사건을 종결한 경우 신고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의사능력이 있는 성년인 실종자가 자신의 소재·연락처 또는 그 밖에 소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정보를 신고인이나 가족에게 공개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의 경우 실종자가 반대하지 아니하고 실종자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없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실종자의 안전이 확인되었다는 사실만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실종자가 가정폭력·스토킹·학대·성폭력 또는 그 밖의 범죄로부터 피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실종자의 의사와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1조(종결사건의 재검토) ① 신고인 또는 실종자의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서의 장에게 사건종결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확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사건종결 이후 새로운 사실이나 자료가 확인된 경우
3. 실종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종전 사건의 종결승인에 관여하지 아니한 관리책임자로 하여금 종결의 적정성을 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③ 재검토 결과 안전확인이 충분하지 아니하였거나 사건종결이 부적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을 재개하고 제9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 및 필요한 수색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④ 경찰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없더라도 사건종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사건종결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제32조(재신고) ① 누구든지 종결된 실종사건의 대상자에 관하여 새로운 실종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종전의 실종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시 실종신고를 할 수 있다.

② 경찰관서는 종전에 같은 사람에 대한 실종사건이 종결되었다는 사실 또는 종전 사건의 처리내용만을 이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새로운 실종신고로 보아 제9조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장 사건기록 및 관리·감독

제33조(실종사건 기록의 불변성 및 변경이력 관리) ① 실종자정보시스템에 최초로 등록된 실종신고, 위험성 평가, 수색, 안전확인 및 사건종결에 관한 기록은 변경 전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정하거

나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정·추가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정보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자동으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치 일시·내용, 해당 조치를 한 사람
2. 변경·추가 또는 삭제의 사유
3. 관리책임자의 승인 여부

③ 사건을 종결하거나 실종자를 발견하였다는 이유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건처리 기록과 변경이력을 삭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경찰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록을 감사·감찰·수사 또는 사건처리의 적정성 검증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34조(실종사건 처리실태의 점검) ① 경찰청장은 실종사건의 부당한 종결을 방지하고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종사건 처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종결의 적정성을 별도로 점검할 수 있다.

1. 특정 실종자로 지정되었던 사건
2. 사건종결 후 재검토 요청이 이루어진 사건
3. 사건종결 후 다시 실종신고가 접수된 사건
4. 사건처리에 대하여 민원 또는 감찰이 제기된 사건

5. 그 밖에 사건처리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

제9장 벌칙

제3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인위치정보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2.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동경로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를 위반하여 부당한 목적이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한 자
2.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의 장의 요청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공한 자
3.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목적 외의 용도로 검사대상물의 채취 또는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유전정보를 이용한 자
5. 제20조제2항을 위반하여 채취한 검사대상물 또는 유전정보를 외

부로 유출한 자

6. 제21조를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